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442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최기상 · 윤준병 · 허영  
이정문 · 한민수 · 한정애  
박해철 · 권칠승 · 조인철  
이광희 · 정준호 · 문진석  
김주영 · 이용선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호지역”이란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12. “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변경등록·해제 방법 및 절차, 실태 조사 및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자연공존지역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정보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0. (생 략)<br><u>&lt;신 설&gt;</u> | 제2조(정의) -----<br>-----.<br>1. ~ 10. (현행과 같음)<br>11. <u>“보호지역”이란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관리 되는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u> |
| <u>&lt;신 설&gt;</u>                                                        | 12. <u>“자연공존지역”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u>                                                                               |
| <u>&lt;신 설&gt;</u>                                                        | 제10조의2(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 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의 전체 또는 일</u>                                             |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생 략)  
<신 설>

부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이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변경등록·해제 방법 및 절차, 실태 조사 및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                                          |                                                                                                                  |
|------------------------------------------|------------------------------------------------------------------------------------------------------------------|
| 체계 구축·운영 등) ① (생략)<br><u>&lt;신 설&gt;</u> | 체계 구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br><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정보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u> |
| <u>②</u> (생략)                            |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